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0. 24
- 다. 상정일자
 - 2005. 10. 27(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2005. 12. 9(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 나. 제안사유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 주요내용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제4조)
 -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제5조)
 -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 방재단을 대표한다.
 -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제7조)
 - 자율방재단의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제8조)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정비, 응급복구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제10조)
 -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예방과 응급복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목표로

- 제정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사료되며,
○ 아울러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고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불 임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 제정이유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제4조)

-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나.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제5조)

-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 방재단을 대표한다
-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

- 자율방재단의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라.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제8조)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정비, 응급복구

마.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제10조)

-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 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순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화순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 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 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 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 면 단원 중에서 과 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읍, 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 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화순군종합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

연재 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

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